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신규 진입하여 평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평가기관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개정(안 제12조 제2항)

-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 2) 더불어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

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
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평가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여야 한다.	② ----- ----- ----- -----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 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1. ----- ----- -----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 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u>3명 이상</u>	가. ----- ----- ----- <u>2명 이상</u>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u>5</u> <u>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u>	나. ----- <u>3</u> <u>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연 락 처	042-481-5807